

구성하여 방문자에게 편안함을 더해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 구성하고, 또한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코너도 신설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최대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 ▶ 협회에서 발간하는 「동위원소 뉴스」, 「동위원소 회보」, 「방사선이용통계」, 「수출입실무안내」, 「동위원소와의 만남」, 「알기쉬운 방사선영

향」 등의 책자를 모두 e-Book시스템을 적용하여 검색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 ▶ 「궁금해요 방사선」 콘텐츠 구성으로 일반인을 위한 방사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무 콘텐츠는 방사선안전관리실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또한 협회 영문사이트를 개설하여 국제화에 맞춰 나갈 예정이다.



<www.ri.or.kr>



<www.ri.or.kr/eng>

●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자기 피부세포를 이용한 '뿌리는 세포치료제' 상용화

- 화상, 방사선피복치료 등 재활 성형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와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원자력실용화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화상환자 및 방사선 피폭 환자 등의 피부조직 복원치료를 위한 '자기 피부세포를 이용한 뿌리는 세포치료제'를 상용화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원자력의학원 손영숙 박사팀이 개발

한 이 세포치료제는 환자로부터 떼어낸 피부조직으로부터 표피세포를 분리·배양시켜 생성된 왕성한 분열 단계의 세포(세포수 100~200배 증가)를 상처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진피와 표피 모두를 동시에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제이다.

위 치료제는 넓은 면적의 피부에 골고루 접종 할 수

있고 실리콘 보호막의 존재 하에 표피층이 재생되는 등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진보한 인공피부 자가 치료제이다.

이 치료제는 피부 재생률이 탁월하며 화상환자, 방사선피폭 환자 등 재활 성형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고 간편한 시술과 높은 치료효과가 기대되어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한 인공피부의 경우 1998년 처음 시판된 이후 1999년에 1억 5천

만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도 화상과 당뇨병 케양 등으로 피부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연간 약 25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가 4천억엔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한 생인공피부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번 연구결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들의 상처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 123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일
과학기술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 활동에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26호)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1) 비파괴검사의 방법을 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6개 방법과 기타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

정된 검사 종목으로 정함(안 제2조)

2)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및 5조)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장비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실용화를 위한 육성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6조제1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전문 인력양성의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7조제1항)

5)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함(안 제10조)

6)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항)

7)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 인력 및 장비의 기준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을 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8) 검사자(책임자를 포함)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으로서 기본교육·전문교육·관리교육으로 구분하고, 일정 기준의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9) 발주자가 설치하여야 할 안전설비의 대상을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안 제16조제1항)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1)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 방법의 종목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정된 음향방출 검사, 육안 검사 등의 종목을 정함(안 제2조)
- 2)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육성할 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
- 3)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비파괴검사 종목별 인력현황, 장비 명세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4조제1항)
- 4) 비파괴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능력·경험을 갖춘 책임자로서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현장근무경험자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현장근무경험자로 정함(안 제5조)

- 5) 검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함(안 제7조)
- 6) 검사자(책임자를 포함)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시간 등을 정함(안 제9조제1항)
- 7)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1항)
- 8) 비파괴검사업무의 성실한 이행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제1항)

3. 의견수렴

과학기술부는 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美알곤국립연구소(ANL)와의 기술협력약정 체결

- 제 4세대(Gen-IV) 원자력시스템 분야 등 공동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朴昌奎)는 2005년 8월 8일 미국 알곤국립연구소(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소장 Robert Rosner)와의 원자력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약정의 주요 분야는 핵주기를 포함한 제 4세대(GEN-IV) 원자력에너지시스템, 첨단 경수로 원자로시스템, 첨단 가스원자로 시스템, 원자력을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 연구로원자로 기술 이용, 제염 및 해체 기술, 원자력과학기술 등이다.

이번 협력약정은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두 기관이 상호 기술협력약정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25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제 26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이번 기술협력약정에 대한 두 나라 정부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력협정 체결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시점에서 성사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은 이번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제 4세대(Gen-IV) 원전설계 시스템 등 공동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 실질적인 원자력연구개발 협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알곤국립연구소는 1960